

	<b>대외협력운영위원회규정</b>	규정번호	3-8-21
		제정일자	2006.01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4차
		소관부서	대외협력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대외협력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대외협력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외협력 체결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대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
3. 대외협력 활동 운영에 따른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가족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
5. 취업지원정책 수립,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6.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.

③ 제2조 3호에 경우 외부산업체 인사 2인을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대외협력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학과별로 산업체인사 및 학과전임교수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며, "○○과 산학협력운영위원회"라 칭한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며, 산업체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과 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대외협력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.

④ 분과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, 이를 대외협력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분과위원회는 학과 대외협력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며,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분과위원회 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